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희귀질환관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희귀질환 지정 업무와 관련한 질환전문 자료 검토 및 환자등록기준 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업무를 질병관리청으로 위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 질병관리청 위임조항 신설
(안 제15조)

나.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 1명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변경
(안 제4조제2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10명”을 “20명 내외”로 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권한의 위임)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4조제3항 및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전문위원회) ① (생 략)	제4조(전문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10명 이내</u>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② ----- ----- <u>20명 내외</u> ----- 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15조(권한의 위임)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4조제3항 및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517 (044) 202 - 2512